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11호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7일
발 의 자 : 조진호 의원
찬 성 자 : 정택진, 임준희,
공기환, 이재식,
이인락 의원 (5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13.시행)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,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함.

나.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. 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부터 제5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

라. 기 타

1) 조 례 안 : 별첨

2) 조례안 예고 :2021. 12. 8. ~ 2021. 12. 12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”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「지방자치법」제53조부터 제56조까지----------..

【관 계 법 령】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1. 10. 19.〉
〔제목개정 2021. 10. 19.〕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